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 결 사 항	
------------------	--

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·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11. 17.

#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·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17.
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## 1. 제정이유

이상기온, 지구 온난화 등 위·해충 서식지 다양화에 따라 감염매개체로부터 고성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재 수준보다 높은 방역 소독 운영체계 필요로 주민 참여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통한 적극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 ~ 제3조)

다. 자율방역단의 임무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~ 제5조)

라. 자율방역단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자율방역단의 예산지원, 금지행위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~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7조, 제47조, 제51조

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」 제36조

나. 예산조치: 2024년 당초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40443(2023. 10. 23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 12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2. ~ 2023. 11. 1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·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자율방역단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 등)**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성군 자율방역단(이하 “자율방역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한다.

1. 고성읍: 15개 단 이내
2. 고성읍을 제외한 면: 1개 단

②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분하며,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.

③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.

**제3조(운영 등)** ① 군수는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읍·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.

③ 읍·면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예

산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**제4조(임무)** 자율방역단은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,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
2. 자율방역단의 방역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
3.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
4. 그 밖에 합동 방역 활동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

**제5조(해임)**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.

1.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
2. 해당 읍면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
3.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
4.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
5. 그 밖의 부정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**제6조(안전교육)**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, 장비운영방법, 약품희석기준,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예산지원)**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

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율방역단원의 방역 활동에 따른 보상금
2. 상해보험가입비
3.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약품 등

**제8조(금지 행위)**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2.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
3.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4.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

**제9조(지도·감독)**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읍·면장으로 하여금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

일 시	참여인원	활동장소	활동내역
특이사항:			

[별지 제2호서식]

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 
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읍면)

- 추진기간:
- 참여인원:        명(연        명)
- 활동횟수:        회
- 주요 활동장소:
- 주요 추진사항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○ 문제점

○ 대책

□ 수범사례

[별지 제3호서식]

### 자율방역단 예산 정산 내역서

단위: 원

읍면	예산액	집행액	잔액	집행내역	비고

※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(증빙자료 첨부)

**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·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**

**1. 관련 조문 및 비용 발생 요인**

**가. 관련 조문**

제7조(예산지원)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자율방역단원의 방역 활동에 따른 보상금
- 2. 상해보험가입비
- 3.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약품 등

**나. 비용발생 요인**

- 자율방역단원 활동 보상금, 상해보험금, 장비 및 소독약품 등

**2. 비용추계의 결과**

**가. 추계의 전제**

- 1) 사업대상: 자율방역단
- 2) 사업규모: 25개 읍면 자율방역단

**나. 추계의 결과**

(단위: 천 원)

연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 계
세출	군비	165,000	165,000	165,000	165,000	165,000	825,000

**다. 재원조달방안: 일반회계 편성**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 계
재원 조달	의존재원						
	자체재원	165,000	165,000	165,000	165,000	165,000	825,000
	기 타						
	소 계	165,000	165,000	165,000	165,000	165,000	825,000

**작성자: 보건행정과장 조 석 래**

□ 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  2.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
  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  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  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  7. 감염병병원체(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,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) 수집·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
  8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  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  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
  11.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
  12. 기후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·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  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  1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  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  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신종감염병의 지정
  17.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, 특성 분석,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, 보고서 발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한다) 고시
- 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 [시행일 : 2020. 9. 5.] 제4조

**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>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., 2020. 3. 4.>

1. 감염병 예방·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주요 감염병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
- 2의2. 감염병 대비 의약품·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
- 3의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
4.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
5.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
6.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>

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47조(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)**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., 2020. 3. 4., 2020. 8. 11.>

1.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일시적 폐쇄
  - 나.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
  - 다.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
  - 라.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2.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
3.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
4.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·접수·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
5.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
6.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

**제51조(소독 의무)**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(이하 “소독”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, 2023. 6. 13.>

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 3. 4.>

③ 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>

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·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8. 11., 2020. 3. 4.>

## 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 약칭: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)

[시행 2023. 7. 13.] [보건복지부령 제949호, 2023. 7. 13., 일부개정]

**제36조(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)** ①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(이하 “소독”이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법 제51조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14. 12. 31., 2020. 6. 4.>

③ 법 제51조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. <개정 2020. 6. 4.>

④ 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4.>

[제목개정 2014. 12. 31.]